보건복지부 | 보도자료 |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15.(월) 조간 / 2025. 9. 14.(일) 12:00 | 배포 2025. 9. 12.(금)

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

-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(인천계양구, 대구달서구, 강원철원군, 전남해남군)-

-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실효적인 방안 모색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9월 15일(월), **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**이라고 밝혔다.

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**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('25.4월~12월)을 추진 중**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.

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**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**하고, 이 경우 **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**하고 있다.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**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(가구주)에게 지급**되고 있어,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**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**하는 상황이다.

❖ **(사례) 수급자 부모**로부터 **자립하고자 분가한 20대 청년**

- **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갔으나, 부모가**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**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 직면**

이번 ‘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(이하 모의적용)’를 통해 **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**할 예정이고,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**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**하고 있다.

< 분리 지급 개념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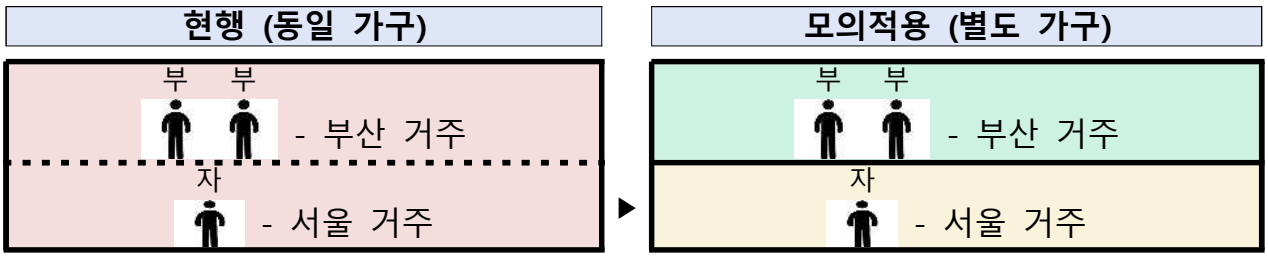

보장단위	3인가구	2인가구, 1인가구 각각
급여수준	1,608,113원 (부모 중 1인에게 지급)	1,258,451원(부모 중 1인에게 지급), 765,444원(자녀에게 지급)

* 부, 모, 자 모두 소득·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함

또한 **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**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**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**이다.

❖ **(사례)** 현재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하나, 담당자마다 해당 조건의 인정 여부(엄격성 여부 등)가 다름

- **부모와의 갈등으로 분가**한 후 암 수술로 일하기 어려워 노숙자쉼터 전전, **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**(경찰 신고 등을 요구) **수급자 미인정**
- **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수급자로 선정**

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**모의적용 지역**으로 인천 계양구, 대구 달서구, 강원 철원군, 전남 해남군 **4개 지방자치단체**를 **선정**하였다.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**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**한다.

이스란 제1차관은 “**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**하고 있다. 이번 모의 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**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**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’ 개요

담당 부서	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	책임자	과 장	박민정 (044-202-3050)
		담당자	서기관	홍승표 (044-202-3052)
			주무관	안선미 (044-202-305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개요**

1 현황 및 문제점

○ **(현황)** 기초생활보장제도는 **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단위 보장 원칙**, 단, **30세미만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간주***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조 1항

○ **(문제점)** ①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**수급신청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***(사례1),

- 급여가 **부모 1인**(가구주)**에게만 지급**되어,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**(사례2) **사각지대 발생**

* **(사례1 : 부모와 종교 갈등으로 분가한 20대 청년)** 암 수술로 일하기 어려워 노숙자쉼터 전전, 외적으로는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자 미인정

** **(사례2 : 수급자 부모 알코올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)**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, 따로 사는 자녀에게 생활비 미송금

- ②현재도 **예외적으로 개별가구 보장을 인정***해주고 있으나,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작동에 한계, **지역마다 해석도 다양**

* ① 기준중위 50% 이상 소득('25년 1인 기준 118.5만원)이 있는 자 ② 미혼부·모, ③ 중증장애인, ④ 기타 가정폭력 등 별도가구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

○ **(그간의 경과)** 국가인권위원회에서 **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가구로 인정하는 방안** 마련 권고

-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청년 간담회 실시(4월), 개선안 마련(5~6월), **지자체 의견수렴** 실시(6~7월)

2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모의적용 계획(안)

○ (목적) **부양의식 변화, 1인 가구 증가** 등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**청년 사각지대를 보호**하면서 **제도 악용***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

* 부모 지원을 받는 20대 및 **입시 전형 준비 수험생 등 전략적 수급자격 인정 등**

- 일부 지역의 모의적용을 통해 **적정 보장 범위·수준,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 후** 보완하여 本 제도화 방안 검토

○ (기준 개선(안)) 부모와 따로 사는 19~29세 대상

- ①(모형1) **수급자인 경우, 부모와 생계급여 분리 지급**

- ②(모형2) **비수급자인 경우, 개별가구 인정 요건 구체화 및 확대**

< 현행/개선 전후 비교표 >

구분	현행	변경(안)
< 모형1 > **부모와 따로 사는 수급청년**	· 부모(가구주)에게만 **가구 전체 급여 지급**	· 주거지를 기준으로 **부모가구, 청년가구 급여 분리 지급**
< 모형2 > **부모와 따로 사는 비수급청년**	**①기준중위소득 50% 이상 소득** **②기타 가정폭력 등(경찰신고 내역 등이 있는 경우로만 인정하는 등 엄격한 경향성)** ③중증장애인 ④미혼부모	**①기준중위소득 50% 이상 소득** 및 **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음*** * **부모 지원을 받으면서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완 (입시 전형 등 악용 방지)** **②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가족부양 기능 상실 (지역 내 가정 밖 청년을 지원하는 공공·민간 자원과 연계·의뢰 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확대)** ③중증장애인(좌동) ④미혼부모(좌동)

3 향후 계획(안)

○ 참여 지자체 공고(8~9월), 모의적용 실시(9월~'26.2월), 결과평가('26년)